

통합방위사태 공고문

□ 통합방위법 제 12조 제5항, 제7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전 지역에 통합방위 “을중”사태를 선포합니다.

1. 대상지역 : 울산광역시

2. 일 시 : 2018년 3월 20일 15:00 부

3. 작전지휘관 : 제53보병사단장

4. 선포이유 : 침투한 적 조기격멸로 후방지역 안정 유지

5. 주민 통제사항

가. 통행금지 : 작전 종료시까지 매일 22:00 ~ 익일 04:00

나. 통제구역 : 울산지역 전 항·포구 및 해수욕장

다. 대피명령 : 탐색격멸작전 지역을 포함 작전지휘관 요청지역

6. 위반자 벌칙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(통합방위법 제 24조)

7. 군·경 합동상황실 운용 : 2018년 3월 20일 15:00부

8.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: 2018년 3월 20일 15:00부

가. 대 상 : 광역시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

나. 인 원 : 1일 2교대로 편성 운용

다. 임 무 : 통합방위작전 보장을 위한 제반 지원

1) 향방 동원된 예비군 급식, 수송지원

2) 지역내 주민신고, 예비군 응소독려, 군사작전지원 홍보 활동

2018년 3월 20일

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김기현 (서명)

울산광역시 시 의 회 의 장 윤시철 (서명)